

1. 모집단위와 모집인원(9~10p 참고)

전형유형	모집인원
중·고교과정 해외이수자	입학정원의 2% 이내
해외전교육과정 및 북한이탈주민	약간명

※ 학과개편 및 정원조정이 있는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모집단위와 모집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내용은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. 추후 확정·공지된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2. 전형방법 및 지원자격

가. 전형방법

계열/모집단위		중·고교과정 해외이수자	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	북한이탈주민
약학부/의학부	1단계(5배수)	서류평가 100%		
	2단계	1단계 성적 60%, 심층면접(지성) 40%		
약학부/의학부 외 전체		서류평가 100%		

※ 서류평가: 학업성취도, 자기소개서 및 학업능력 입증서류 일체를 종합적으로 평가

※ 심층면접(지성): 전공적합성과 기초학력을 종합적으로 평가

나. 지원자격 ※ 2022학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본사항을 따름

1) 중·고교과정 해외이수자

-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(우리나라 학제(12학년)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) 해외근무자의 자녀로서 『외국 근무·재학·체류 기간』에 제시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(단, 검정고시 제외)
- ※ 복수국적자는 국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.
- ※ 개인사유의 유학, 교육, 연수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가) 외국 근무(재직)·재학·체류 기간 자격요건

외국학교 재학형태	구 분	기 간		
		근 무 (재 직)	재 학	체 류
고교과정 1개년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 중·고교 과정을 해당국에서 연속(비연속) 이수	보호자 (부 또는 모)	3년	-	1개 학년마다 2/3이상
	보호자의 배우자 (부 또는 모)	-	-	
	학 생	-	3년	1개 학년마다 3/4이상

[해외 근무(재직) 기간]

- 해외에서 근무/사업/영업을 목적으로 재직한 기간
- 해외근무 상사주재원의 경우 파견기간이 지난 근무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
[해외 재학 기간]

- 보호자 및 배우자의 해외 근무(재직) 국가와 동일한 국가 소재 학교에서 재학한 기간으로, 고교 1개년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.(검정고시 불가)
- 재학기간 인정 기준
 - *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했을 경우: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.
 - *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: 편입학일로부터 1년(약 365일)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.
(단,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)

[해외 체류 기간]

- 방학, 휴일 등을 제외한 학기 중에는 해당국에 체류하여야 합니다.
- 보호자 및 배우자는 1개 학년마다 2/3이상, 지원자는 1개 학년마다 3/4이상 해당국에서 체류하여야 합니다.
- 체류 기간 인정 기준(1개 학년 기준)
 - *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했을 경우: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.
 - *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: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(약 365일)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.

2) 해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

- 해외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(초·중·고 전 과정)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해외 정규고교 졸업(예정)자
 - ※ 복수 국적자는 국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.
 - ※ 방학, 휴일 등을 제외한 학기 중에는 해당국에 체류하여야 합니다.

3) 북한이탈주민

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·외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
 - ※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.
 - ※ 북한이탈주민에 한하여 국내 검정고시 합격자도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.

다. 지원자격 기준 시점

- 1) 대한민국의 학년도가 끝나는 2022년 2월 28일을 자격인정 기준시점으로 합니다.
- 2)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년도가 1개월이 늦은 국가(일본 등)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 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.

라. 기타사항

- 1) 부정·편법·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(12년)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,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(6개월)에 한하여 인정합니다.
(총 23학기, 11년 6개월 이상 충족)
- 2)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(전·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)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, 초·중·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.
- 3) 동일 학년(학기)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 - 단,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.(복수 발생 인정)
 -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.
 -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
 -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, 부정·편법·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4) 기타 이상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대학에서 판단합니다.
- 5) 검정고시, 홈스쿨링,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 - ※ 단,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합니다.
- 6) 본 기본계획 및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내규에 따라 결정합니다.